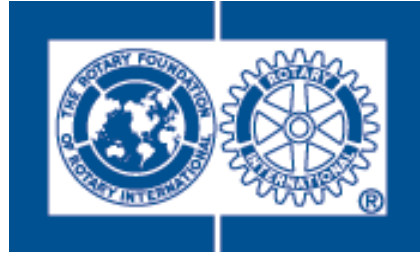


국제로타리의 로타리재단



기부 수령 정책 매뉴얼

목 차

I.	사명 선언 및 기부 수령 정책의 목표.....	1
II.	미국 국외에서의 기부 수령 정책.....	1
III.	법률 고문의 사용.....	2
	가. 기부자의 법률 고문의 사용.....	2
	나. 로타리재단의 법률 고문의 사용.....	2
IV.	기부의 정의.....	2
V.	기부의 지정.....	2
VI.	수령 가능 기부의 유형.....	3
	가. 무조건 기부.....	3
	1. 현금 및 수표.....	3
	2. 자금의 유선 이체.....	3
	3. TRF-직접기부.....	3
	4. 신용카드 기부.....	4
	5. 증권.....	4
	가). 상장 증권.....	4
	나). 뮤추얼 펀드 주식.....	5
	다) 비 상장 증권.....	5
	라). 제한적 증권.....	6
	6. 부동산 기부.....	7
	7. 생전 보유 부동산 또는 기타 제한/한정 조건부의 부동산 기부.....	8
	8. 연가 매도.....	8
	9. 개인의 유형 동산.....	8
	10. 현물 기부.....	10
	11. 기타 비 전통적 자산 기부.....	10
	나. 분할 이권 기부.....	11
	1. 자선 기부 연금.....	11
	2. 자선 선 순위 신탁.....	12
	3. 자선 후 순위 신탁.....	12
	4. 공동 소득 기금.....	13
	다. 이연 기부.....	13
	1. 유증.....	13
	2. 생명보험 증서.....	13
	3. 로타리 재단을 수혜자로 지명.....	14
	라. 고액 기부 서약.....	14
	마. 로타리재단 기부자 추천 기금.....	15
VII.	기부 영수 확인.....	15
VIII.	기부 수령 위원회.....	15
IX.	정책의 개정 및 검토.....	15
X.	정책 발효 일자.....	16

I. 사명의 선언 및 기부 수령 정책의 목표

로타리재단(“재단”)의 사명은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인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로타리 강령과 사명, 그리고 세계 이해와 평화 증진을 이룩하려는 국제로타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단의 본부는 1560 Sherman Ave. Evanston, IL 60201 USA 에 위치한다. 재단의 미국 국세번호는 36-3245072 이다.

재단의 기부 수령 정책(정책)의 목적은 기부의 수령을 관리하고 기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부자와 그들의 전문적인 고문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모든 기부는 여기에 규정된 정책들에 따라 수령되어야 한다.

이 정책의 범위는 주려고 하는 기부를 수령하느냐 수령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 정책은 재단이 소유하는 재산의 처분이나 기부자 표창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II. 미국 국외에서의 기부 수령 정책

로타리재단은 국제적 단체이다. 재단은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기부자로부터의 현금기부나 재산기부를 다소간에 수령하거나 수령을 고려할 수 있다.

로타리재단과 연합 관계에 있는 재단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부의 수령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는 이 기부 수령정책에 규정된 바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로타리재단과 연합 관계에 있는 재단에 의한 모든 종류의 기부의 수령은 모든 지역의 법률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로타리재단으로의 자산의 이전은 미국의 법률이나 기부자가 속한 지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 행해질 수 없다.

로타리재단과의 연합 관계에 있는 재단은 아래를 포함한다:

The Rotary Foundation (Canada)
Rotary Deutschland Gemeindienst e.V.
The Rotary Foundation (India)
Rotary Foundation of the United Kingdom
Australian Rotary Foundation Trust
Associação Brasileira da The Rotary Foundation
NPO Rotary Foundation Japan

이 정책에 나타나는 모든 금액을 표시하는 숫자는 미국 달러화를 표시하며, IRS 는 미국의 조세당국(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Service)을 가르친다. 이 정책에 나타나는 송금 지시(transmittal instructions)는 미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기부들에게만 해당된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기부의 송금지시에 관하여서는 관련된 연합 재단이나 한국지국에 문의한다.

III. 법률 고문의 사용

기부자 및 재단이 각자의 법률 고문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에게 유익한 일이다. 재단은 기부의 수령인이므로 기부자의 자문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잠재적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하기 전에 독립적인 조세 그리고/또는 법률 고문과 상담하도록 충고한다.

가. 기부자의 법률 고문의 사용

재단의 대표(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는 기부자가 재단에 기부를 하기 전에 독립적인 조세 그리고/또는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기부행위에 관련하여 적절한 독립적인 조세 그리고/또는 법률 고문을 두는 것은 기부자의 책임이다. 분할 이권, 자선 기부 연금, 자선 후 순위 신탁 그리고 자선 선 순위 신탁 등을 기부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이전에, 관련된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기회가 기부자의 자문에게 주어져야 한다.

나. 로타리재단의 법률 고문의 사용

분할 이권의 기부와, 현금이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이외의 자산의 무조건 기부는 국제로타리 법률 담당 부서에 의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담당 부서는 잠재 기부의 평가를 지원하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을 것이다.

IV. 기부의 정의

기부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자산의 로타리재단에 대한 스스로 자원하는 이전이다. 기부는 통상 현금, 증권, 부동산 또는 동산의 형태를 갖는다. 재단은 어떤 기부를 수령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다음은 기부임을 입증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다.

- 가. 기부는 자선의 의사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된다.
- 나. 기부는 자산의 취소불능 이전이다.
- 다. 이 정책에 규정된 특정의 분할 이권의 이전을 제외하고는, 기부의 목적이 언급되며, 기부 기금의 사용이 특정 목적에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는 일반적으로 재단과 기부자 간의 고려 또는 계약상 의무 교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 라. 기부자들은 공식적인 재정 회계보고를 제공 받지 않는다. 당해 기부의 유용이나 기부가 미친 영향을 언급하는 일반적인 보고로 충분하며, 특히 영구기금, 재단의 자산에 대한 지명 기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반적인 보고가 소망스럽다.
- 마. 일반적으로 개인, 개인 기업, 그리고 가족 재단으로부터 받은 기금이 기부로 분류될 것이다. 기업, 기업 재단, 그리고 주요 재단들로부터 수령한 기금은 그러한 기부가 업적이나 기타 반대급부적 고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기부로 분류된다.
- 바. 재단에 의하여 영수 될 때까지는 그리고 증권, 채권 또는 뮤추얼 펀드의 경우에는 재단의 구좌에 입금될 때까지는 기부 행위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V. 기부의 지정

기부의 사용에 관한 기부자의 지시가 없는 기부가 미화 1 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 기금(World Fund)을 포함하는 영구기금에 계상된다.

VI. 수령 가능 기부의 유형

가. 무조건 기부

무조건 기부는 그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와 같은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 기부자의 자원적이며 의도적인 현금 또는 재산의 재단에 대한 기부이다. 기부자는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무조건 기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선으로 이전된 현금 또는 재산에 대한 어떤 통제도 가할 수 없다. 무조건 기부의 범례는 현금, 증권, 개인의 유형자산, 그리고 부동산 등의 기부이다.

1. 현금 및 수표

현금과 수표는 금액에 관계 없이 수령된다. 현금 및 수표 기부의 가치는 당해 현금 및 수표의 액면 금액이다. 수표는 수령인을 The Rotary Foundation 으로 하여 아래로 보내야 한다:

The Rotary Foundation
14280 Collections Center Drive
Chicago, IL 60693

2. 자금의 유선 이체 (유선 이체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미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금은 기부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재단으로 이체될 수 있다. 유선 이체를 위해서는 기부자는 자신들의 은행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기부자는 그러한 이체를 재단에 통지함으로써 그러한 이체가 적절하게 적시에 기부인정과 적절한 기부 점수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체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Bank of America
231 South LaSalle Street
Chicago, IL 60604
은행 고유번호: 026009593
구좌 명: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
구좌 번호: 8666023173

유선 이체는 미국 달러 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 TRF 직접 기부

TRF 직접 기부 프로그램은 기부자가 자금을 그들의 당좌계정, 저축계정 또는 신용카드로부터 재단에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가). 기부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일에 당좌구좌나 저축구좌로부터 TRF-직접기부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이체토록 하는 데는 기부 건당 최소 미화 10 달러의 수수료가 요구된다.

나). 기부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일에 신용카드로부터 TRF-직접기부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이체토록 하는 데는 기부 건당 최소 미화 25 달러의 수수료가 요구된다.

4. 신용 카드 기부

기부자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자금이 이전될 수 있다. 신용카드 기부 양식은 재단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통한 자금이전을 위해서는 이 양식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한다. 개인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에는 금액의 최저 한도가 없다.

5. 증권

인정 받는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을 포함하여, 증권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과 기타 항시 매도할 수 있는 증권은 아래의 정책에 따라 로타리재단에 의하여 기부로 수령될 수 있다. 재단에 기부된 증권은 가능한 대로 무조건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상장 증권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상장 증권 기부의 가치는 당해 증권이 기부자에 의하여 재단에 이전된 날의 주식 또는 채권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치이다. 덜 활발하게 거래되는 증권, 드물게 거래되는 증권 또는 기부일에 거래가 없는 증권 의 가치는 IRS 출판물 561 에 규정된 IRS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재단은 이전될 증권, 증권의 수효, 기부일자, 그리고 기부의 사용처(예를 들면, 연차 프로그램 기금, 영구기금 또는 폴리오플러스) 등을 사전에 통지 받아야 한다. 재단은 증권이 수령되는 무조건 가능한대로 신속하게 그러한 증권을 매도해야 한다.

1. 유선 이체를 통한 증권의 기부

증권은 DTC 를 경유하여 아래의 재단 중개업자 구좌로 직접 이체될 수 있다:

The Rotary Foundation of Rotary International
Account #695-04362, DTC #5198
Steven H. Loewenthal, Merrill Lynch
400 Skokie Boulevard
Northbrook, IL 60062
Telephone: 847-564-7240

2. 우편을 통한 증권의 기부

기부자가 증권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서명되지 않은 채로 이를 The Rotary Foundation's Gift Administration Department at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 으로 등기 우송해야 한다. 서명된 주식/채권에 대한 권한 위임 양식이 증권/채권과 별도로 보내져야 한다. 주식/채권에 대한 권한 위임 양식의 서명이 증서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직접 전달방식의 증권 기부

주식 증서는 Evanston,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 에 소재하는 재단의 기부관리 부서(Gift Administration Department)에 전달되어야 한다. 기부자는 은행의 신탁 부서에 증서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재단에 그 기부를 즉각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서명된 주식/채권 권한 위임장이 TRF 그리고/또는 신탁 부서나 브로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나). 뮤추얼 펀드 주식

뮤추얼 펀드 주식이 재단에 의하여 수령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뮤추얼 펀드 주식을 기부 받기 위해서는 재단은 구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국면은 재단의 통제 밖이며,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는 여러 주간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기부자는 그러한 거래를 완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 (2-3 주간)을 주도록 충고 받아야 한다.

뮤추얼 펀드 주식을 기부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기부할 뮤추얼 펀드 주식과, 주식 증서가 보관되고 있는 기관(증권회사, 금융기관 또는 뮤추얼 펀드 회사 자체), 주식의 수, 기부하려는 일자, 기부의 사용처 (예를 들면, 연차 프로그램 기금, 영구기금 또는 폴리오플러스) 등을 사전에 연락 받아야 한다. 주식 증서가 뮤추얼 펀드 회사에 보관되고 있으면, 기부자와 TRF 는 주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동 회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이 증권회사나 금융기관에 보관 중이면 재단은 그러한 회사나 기관을 접촉하여 구좌를 개설한다. 구좌가 개설되면, 그 기관이나 회사는 당해 주식을 재단의 구좌로 이전시킬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은 재단 구좌로 이전된 이후 가능한 대로 신속하게 매도되어야 한다.

뮤추얼 펀드의 공정 가격은 당해 주식이 재단 구좌로 이전되는 일자의 당해 주식의 공공 시장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한 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면, 그러한 주식의 가치는 IRS 출판물 561 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지 않는 비 상장 주식처럼 평가된다.

다). 비 상장 증권

증권시장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지 않는 비 상장 증권은 기부 수령 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수령될 수 있다.

비 상장 증권의 가치는 거래가 잦지 않기 때문에 그 공정 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로타리재단은 비 상장 증권의 가격이 미화 1 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만 기부로 고려할 수 있다.

비상장 증권이 수령되기를 고려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기부 수령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 미국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IRS 출판물 56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있는 자에 의한 독립적 평가서
2. 웨어 보유자의 매입/매도 합의서의 사본

3. 세칙에 포함된 그리고/또는 주식 증서에 반영된 주식 이전 제한 규정의 사본

기부자들은 조세에 관련하여 그들의 기부의 가치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문과 상의하며, 평가의 절차, 평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IRS Publication 561 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라. 제한적 증권

제한적 증권(비 등기 증권, 사적 발행 증권 등으로도 알려짐)들은 소유권 이전과 공정한 시장가격 결정의 곤란 때문에 기부로 주어지는 예가 드물다. 제한적 증권은 기부 수령 위원회에 의한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로타리재단이 수령할 수 있다.

로타리재단은 미화 1 만 달러를 상회하는 제한적 증권의 기부를 고려할 것이다. 제한적 증권의 수령이 고려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이 기부 수령 위원회(Gift Acceptance Committee)에 제출되어야 한다:

1. 미국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및 IRS Publication 561 에 규정된 자격 갖춘 독립적 평가서
2. 주식 보유자의 매일/매도 합의서 사본
3. 이전 (transfer) 제한조항의 사본

기부자들은 조세에 관련하여 그들의 기부의 가치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자문과 상의하며, 평가자의 절차, 평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IRS Publication 561 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6. 부동산 기부

부동산 기부는 개량 또는 미 개량 토지, 개인주택, 콘도미니움, 아파트 빌딩, 임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기부 수령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이 있으면, 재단은 최저 미화 2만 5,000 달러의 가치를 가진 미 개발 부동산, 최저 미화 10만 달러의 평가 가치를 지닌 미 개발 부동산의 무조건 기부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재단은 그러한 기부는 수령 이후 가능한대로 신속하게 매도할 것이다.

수령 기준

기부 수령 위원회는 모든 잠재적 부동산 기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가질 것이다. 수령을 고려 받기 위해서는 잠재적 부동산 기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부동산을 수령할 때에 재단에게 법률 비용, 관리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재단이 종국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만큼 높다;
- 나). 평가 가격 또는 평가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항상 매도할 수 있다;
- 다). 재단에 상당한 잠재적 추가 비용, 위험 또는 채무를 초래하거나, 재단이 재단의 목적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또는 매도 이전에 당해 기부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부당한 부담을 지을 어떠한 담보권, 대출금,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

필요한 서류

부동산 기부가 수령되기 전에 작성된 “부동산 수령 양식”(Real Estate Acquisition Form)을 포함한 서류들이 기부 수령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단은 부동산 기부의 수령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TRF가 인정하는 보험회사가 발급한 기부자의 성명으로 된, 매도에 지장을 줄 하등의 하자가 없이 매도 가능함을 증명하는 소유권 보험 증서
- 나). 자격자에 의한 평가서(아래 추가 언급을 참조)
- 다).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재단이 환경문제상의 부담에 처하도록 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 자격 있는 엔지니어가 발급한 환경감사서
- 라). 당해 부동산의 시장 타당성 조사서
- 마). 등록된 토지 조사자가 발급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미국 토지 소유권 협회(ALTA; American Land Title Association)의 조사서
- 바). 미국의 장애인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 사). 구조 엔지니어링 보고서(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 아). 임대계약의 검토 및 임차인의 보험증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 자). 광산물, 기름 또는 가스 등의 채굴권을 포함한 주거용 부동산의 명세서

위에 기술된 재단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이전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기부자가 부담한다.

조세 고려

당해 부동산에 적용되는 IRS 규정에 따라, 기부자는 부동산의 최초 평가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 조세평가는 기부일자 이전 60일 이내에 그리고 조세 감면이 최초로 주장되는 세금 보고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기부자는 IRS Form 8283 을 작성해야 한다. 로타리재단이 수령 후 2년 이내에 기부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IRS Form 8282 를 IRS 에 제출하여 당해 매도를 조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orm 8282 이 당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부동산 기부에 있어서, 기부자는 그러한 기부에 적용되는 법률 및 조세 감면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충고 받는다.

7. 생전 보유 부동산 (Retained Life Estates) 또는 기타 제한/한정 조건부 부동산 기부

생전 보유 부동산의 기부는 개인 주택이나 농장의 소유권을 기부자 또는 특정인의 사망 이후에 재단이 이전 받게 된다.

그러한 기부는 이 정책에 규정된 (VI 의 6 “부동산 기부”참조) 일반 조건들과 무조건 부동산 기부의 수령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생존 기간 동안에 기부자에게 이권을 부여하는 합의서는 모기지 지급, 조세, 보험(로타리재단을 손해 보상 수혜자로 하는 부동산 보험, 로타리재단을 추가 피 보험자로 하는 일반 손해보험, 그리고 로타리재단의 판단에 따른 여타 필요한 보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익사업 비용, 유지/수리 그리고 기타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여타 규정이 이러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기부자 그리고/또는 생존기간 동안의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은 그러한 비용의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보험 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기부자(들)은 당해 부동산에 적용되는 환경법/조례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범해지도록 허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8. 염가 매도 (주택 장기 대출금이 있는 부동산 포함)

염가 매도란 최근의 자격자에 의한 평가에 따른 공정 시장가격 이하로 당해 부동산을 재단에 매도하는 것이다.

기부 수령 위원회의 검토와 승인이 있는 대로 재단은 당해 부동산,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을 염가로 매입할 수 있다.

통상, 그러한 재산의 구매 가격은 평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염가 매도 대금은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될 수 있다. 위에서 규정한 자산의 유형에 대한 제한은 준수되어야 한다.

9. 개인의 유형 동산 (매도할 의향을 가지고 수령한)

개인의 유형 동산이란 개인에 의하여 만져지며, 조작되며,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다(회사의 소유권과 같은 자산과는 반대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동산은 그림, 동전 및 수집 우표, 보석류, 가구, 또는 유사하게 독특한 자산이나 기부자가 소유한 소장품이다.

기부 수령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있는 대로 재단은 이 유형의 동산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은 자동차, 보트, 비행기 그리고 모토 바이크 등은 수령하지 않는다. 재단은 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능한대로 신속하게 투자한다.

수령의 기준

일반적으로 유형의 동산은 1) 재단의 최소한의 기부 가치를 갖는다. 2) 항상 매도할 수 있으며 3) 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것들이 수령될 수 있다. 유형의 동산은 보관, 유지, 매도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모든 여타 지침을 충족시킨다면, 기부 수령 위원회는 미화 1 만 달러 이상의 보석류의 기부를 수령하는 것을 고려하며, 미화 2 만 5,000 달러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미술품 및 수집물을 기부로 수령하는 것을 고려한다.

필요한 서류

재단에 유형의 동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기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부 의향서는 기부할 동산에 대한 설명, 소유권 증명, 기부자가 지불한 가격, 구입 일자, 그리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 60 일 이내에 실시된 자격자에 의한 평가서.

유형의 동산을 수령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가). 기부자가 재단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기부하는 기부. 대부분의 동산은 현금 수입, 소득, 또는, 자선 신탁을 낳는데 부적절하다;
- 나). 항상 매도할 수 있는 동산 인지 여부와 매도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 다). 기부자가 당해 동산의 사용, 전시 또는 매도에 어떤 제한을 부과하는지;
- 라). 수령한 이후에 가능한대로 신속하게 그 동산을 매도하려는 재단의 의도를 기부자가 알고 있는지;
- 마). 기부자가 포장, 운송, 운송보험 그리고 기타 기부를 재단에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기부자가 기부하려는 동산의 포장, 운송, 운송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유형의 동산이 로타리재단에 이전되어 소유권의 이전이 끝날 때까지 동 물품은 기부자의 부담으로 보험에 들어야 한다.

조세 고려

기부자는 IRS Form 8283 을 작성해야 한다. 로타리재단이 수령 후 2년 이내에 기부 받은 유형 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IRS Form 8282 를 IRS 에 제출하여 당해 매도를 조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orm 8282 이 당해 기부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부동산 기부에 있어서, 기부자는 그러한 기부에 적용되는 법률 및 조세 감면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충고 받아야 한다.

10. 현물 기부 (재단이 사용하도록 보유된)

가구, 장비, 의료품,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타리 관련 기록물들이 로타리재단의 수령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현물 기부의 범례이다. 기부 수령 위원회가 그러한 기부를 건 별로 고려할 것이다.

수령 기준

기부의 성격에 따라, 그것에 관련된 유지, 보관, 운송 그리고 보험 등의 비용이 있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기부 수령 위원회는 어떤 기부가 로타리재단에 의하여 현물기부로 결정되는가를 아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가. 기부 현물이 로타리재단의 사명을 증진하거나 역사를 승화시키는지의 여부나, 기부자가 기부 현물의 사용이나 전시에 일정한 제한을 요청하는지의 여부다. 기부자가 포장, 운송, 운송보험(기부 현물이 안전하게 재단에 운송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결될 때까지) 그리고 기타 기부를 재단에 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필요한 서류

재단에 유형의 현물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부 의향서는 기부 현물에 대한 설명, 소유권 증명, 기부자의 구입 가격, 구입 일자, 그리고 의향서 제출일 이전 60 일 이내에 실시된 자격자에 의한 평가서. 이에 더하여, 기부자는 분명하게 기부 현물을 밝히며(현물 품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든 소유권을 재단에 이전한다는 기부자의 명백한 의향을 표현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세고려

기부자는 그러한 기부에 적용되는 법률 및 조세 감면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충고 받는다. 당해 품목이 로타리재단이 재단의 사명을 증진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상, 기부자의 조세 감면은 그/그녀의 구입 비용과 당해 품목의 공정시장가격 중에서 작은 액수를 기준으로 행해질 것이다.

11. 기타 비 전통적 자산 기부

비 전통적 자산의 기부는 복잡하며 추가적 위험을 초래하고 기부자에게와 로타리재단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정책은 그러한 유형의 기부를 수령함에 있어서 재단이 현명한 결정을 하여 재단 프로그램에 최고의 혜택을 주도록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

가). 지적 재산

로타리재단은 로열티, 판권, 특허권, 계약상 권리, 그리고 기타 유사한 무형 자산은, 기부 수령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수령을 고려한다. 기부 수령 위원회는 지적 자산의 평가 가치와 그러한 기부를 영수하는 데 따르는 비용, 그리고 기부자가 판권이나 로열티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위임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지적 자산의 수령 기준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당해 지적 재산이 로타리재단의 사명을 증진시키는 것인지의 여부
2. 지적 재산의 소유권이 분명하게 로타리재단에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
3. 지적 재산이 전체 이권인지 분할 이권인지
4. 당해 이권이 기부 수령 위원회가 그러한 기부로 고려할 수 있는 최저금액인 미화 5,000 달러를 상회하는지의 여부
5. 당해 지적 재산을 수령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
6. 기부자가 당해 지적 재산의 사용이나 보유에 일정한 제한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

나). 기름, 가스 그리고 채광권

로타리재단 본부는 채광권이 풍부한 주(state)에 위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권은 매도하기가 어렵고, 그러한 이권으로부터 창출될 소득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단은 기부 수령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이러한 기부를 수령한다.

기름, 가스 그리고 채광권 기부를 수령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기부 이권의 가치가 미화 2 만 5,000 달러를 초과.
2. 기름, 가스 그리고 채광권은 로열티나 기타 형태의 소득으로 매년 미화 3,000 달러 이상의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기부 전 3년 간의 평균치로 결정).
3. 당해 재산이 이연 채무나 기부의 수령을 부적절하게 만드는 기타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재단은 더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기부자는 재단이 현시적 또는 잠재적으로 환경상의 문제를 갖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환경 검토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 공동소유 휴가시설

제한된 가치와 시장 그리고 휴가시설의 유지에 따르는 불가피한 비용 때문에, 로타리재단은 추정 시장가격이 미화 10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러한 종류의 기부는 수령하지 않는다. 가치가 미화 10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재단은 기부 수령 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공동소유 휴가시설을 수령할 수 있다. 공동소유 휴가시설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그들의 의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향서는 기부 시설의 사양, 소유권 증명, 그리고 의향서 제출 전 60 이내에 행해진 자격자에 의한 평가서.

나. 분할 이권 기부

1. 자선 기부 연금 (Charitable Gift Annuities)

자선 기부 연금은 기부자의 현금 또는 재산의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선기관이 기부자에게 고정 지급(연금)을 제공할 것에 대한 합의이다.

연금수령자의 생존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 금액과 지급 빈도는 결코 변할 수 없다. 재단의 자산이 그러한 지급을 보장한다.

재단은 기부 수령 위원회가 추천한 연금 율을 사용한다. 연금 수령인의 수와 그들의 연령이 연금 율을 결정한다. 각 연금에는 최고 2명의 연금 수령인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의 연령은 기부 당시에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부 연금을 설정하기 위한 최저 기부금은 미화 1만 달러이다.

2. 자선 선 순위 신탁 (Charitable Lead Trusts)

자선 선 순위 신탁은 소득 또는 “우선” 이익이 재단에 지급되고 “잔여” 이익이 1인 또는 2인 이상의 비 자선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신탁이다. 재단에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금액(“연금 신탁”) 또는 매년 평가되는 신탁자산 가치의 일부분(“유리트러스터” 이권)일 수 있다. 지급 기일이 끝나면, 신탁자산은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명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당초 기부가 최소한 미화 10만 달러이며, 신탁 기간이 재단의 승인을 조건부로 기부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선 선 순위 신탁의 피 신탁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

3. 자선 후 순위 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s)

자선 후 순위 신탁은 일정 헷수 또는 생존기간 동안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지명한 특정인에게 특정한 분배를 제공하는 취소불능 신탁이다. 기간이 만료되는 무조건, 모든 잔여 신탁 자산이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선 기관에 이전된다.

자선 후 순위 연금 신탁(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은 당초 신탁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의 최소한 5%에 달하는 고정 연금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일단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는 추가적 기부가 동일 신탁에 추가될 수 없다.

자선 후 순위 유니트러스트(charitable remainder unitrust)는 매년 재 평가되는 당초 신탁자산의 공정시장 가격의 고정 백분율(최소 5%)의 금액을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자산의 가치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유니트러스트는 매년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신탁 계약에 해당 조항이 있으면 동일 신탁에 대한 추가적 현금 기부가 가능하다. 추가 기부액은 미화 1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유니트러스트의 수차에 걸친 신탁금 변경 가능성은 융통성을 제공한다.

재단은 당초 신탁금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이고 재단이 유일한 자선 수혜자로 지정되는 자선 후 순위 신탁의 피 신탁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 소득이 생존 전 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 수혜자는 50세 이상이며 2명 이하이어야 한다.

4. 공동 소득 기금

로타리재단 공동 소득 기금의 조건에 따라, 기부자는 “기금”에 현금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기부할 수 있다. 그러한 기부에 대하여, 기금의 유니트가 각 기부자에게 배분되며, 기부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수혜자는 일생 동안 그러한 유니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수령하게 된다. 기부자는 1명 또는 2명의 소득 수혜자를 지명할 수 있다. 수혜자는 최소한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금에 기부된 자산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한데 모아져 공동투자기금이 된다. 매 4분기마다 소득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기부의 시장 가치와 기금이 거두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 소득 기금에 참여하기 위한 당초 기부의 최저한도는 미화 5,000 달러이다. 미화 1,000 달러 이상씩 추가 기부할 수 있다.

다. 이연 기부

이연 기부는 일반적으로 생존 시에 기부되나 사망 시에 효과를 발휘한다. 재단에 의한 집행을 요하는 이연기부는 그 형태와 실체가 재단에 의하여 우선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기부자는 기부를 지정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재단과 상의하고 고려될 수 있는 제한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충고 받는다.

1. 유증

재단에 대한 유증은 기부자의 유언에 기재된 기부이다. 기부자의 사망시에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기부자의 취소불능 신탁은 유증과 똑같이 취급된다. 기부자는 특정 금액, 일정한 백분율 유증액에 곱한 금액, 또는 잔여 분을 재단에 지정할 수 있다.

근거가 되는 자산이 이 정책의 VI. 가. 항의 “무조건 기부”에 대한 규정에 일치하면, 저당 부채 등의 부담이 없는 직접 유증은 재단에 의하여 수령되어야 한다. 재단은 이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사망자의 유산 또는 신탁으로부터의 기부를 수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기부자는 재단에 남겨지는 유산이 이 정책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증을 고려할 때에 재단에 통보할 것을 권장 받아야 한다.

2. 생명보험 증서

재단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생명보험 증서의 소유권을 수령할 수 있다:

- 가). 기부일 현재 시점에서 기부될 증서가 전액 납입되었을 때:
 - 증서의 액면가액이 최소한 미화 1,000 달러를 상회;
 - 피보험자가 보험통계에 비추어 15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재단은 어떠한 증서 대부나 기타 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순 현금 가치로 증서를 현금화 할 수 있다.

나). 기부일 현재 시점에서 기부대상 증서가 전액 납부되지 않았고, 기부자가 재단이 그를 대신하여 보험불입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할 때:

- 증서의 액면 가액이 최소한 미화 5,000 달러 이어야 한다;
- 피보험자가 보험통계에 비추어 15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재단은 어떠한 증서 대부나 기타 부담금을 공제한 후의 순 현금 가치로 증서를 현금화 할 수 있다.
- 기부자가 관련되는 정기 보험 납입금과 같은 금액을 재단에 미리 기부할 것에 동의한다;
- 정기 보험 납입금이 미화 200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 기부일 현재, 기부대상 증서가 전액 납부되지 않았고, 기부자가 장래 지급해야 할 납입금을 기일까지 전액 납부할 것이라면;

- 증서의 액면가액이 최소한 미화 1,000 달러를 상회;
- 피보험자가 보험통계에 비추어 15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재단은 일정한 증서 대부나 기타 부담금을 공제한 후 순 현금 가치로 증서를 현금화 할 수 있다.

개인 생명보험 기부만이 수령될 수 있다; 개인의 그룹이 구입한 개인 보험 증서들은 수령될 수 없다. 로타리재단은 기간 생명보험(term insurance) 증서의 소유권을 수령하지 않는다.

3. 로타리 재단을 수혜자로 지명

재단은 생명보험 증서, 이연 연금 계약, IRA, 정의된 이익 계획, 401(k) 플랜, 정의된 기부(이익 분배) 플랜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플랜 등의 지명된 수혜자(또는 대체 수혜자)로서 수익금을 수령할 것이다. 다만, 그 지명이 제한을 가하거나, 신탁관리를 부과시킬 때는 재단에 의한 사전의 검토 및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재단은 보험증서 상의 이익금은 금액의 과다에 무관하게 이를 수령할 것이나, 그것이 관리상 부담스러운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부할 권한을 갖는다.

라 고액 기부 서약

재단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에 걸쳐,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일정 기간 동안에 기부한다는(서약)을 수령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서약은 총 서약 액과 횟수에 비례하여 첫 회의 기부 분할금을 영수할 때에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약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약은 기부자가 행해야 할 의무를 표현하는 것으로 고려되어 재단의 재무 재표에 기록된다.

마. 로타리재단 기부자 선택 기금

로타리재단 기부자 추천 기금은 로타리재단이 보유하는 별도 기금이다. 기부는 취소불능이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조세 감면을 적용 받는다. 기부자 추천 기금은 개인들과 로타리 연합 그룹들에게 IRS 가 승인하는 미국에 위치하는 자선기관들에게 보조금 추천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하는 재단 및 기타 자선 기부의 수단이다. 로타리재단의 기부자 선택 기금의 모든 활동과 이 프로그램에의 기부자의 참여는 기부자 추천 기금 프로그램 서클러(Donor Advised Fund Program Circular)에 설정된 조건에 따른다.

VII. 기부 영수 확인

재단은 수령한 모든 기부에 대하여 IRC 조항 170(f)에 규정된 IRS 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개인 기부자들에 의한 자선 기부의 조세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발급한다.

VIII. 기부 수령 위원회

기부 수령 위원회의 목적은 재단에 대한 기부의 수령에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부의 수령에 관련한 관리위원회 정책에 관련하여 사무총장에게 자문; 재단에 대한 기부의 수령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와 실행방법을 개발.

이 위원회는 사무총장, 로타리재단 제너럴 매니저, 최고 재정 간부(CFO), 컨트롤러, 재정부장, 코포레이트 카운슬, 기금 개발 매니저 등으로 구성된다. 여타 직원이 필요에 따라 인적 자원으로 초청될 수 있다.

기부 수령 위원회의 회의는 부동산, 개인의 유형 동산, 개인 소유 주권과 현행 기부 수령의 실제 또는 지침이 포괄하지 못하는 기부들을 검토하고, 법률상 또는 재정상 요건의 변경에 따른 실행의 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또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 된다.

IX. 정책의 개정 및 검토

재단의 기부 수령 위원회는 이 정책에 대한 개정을 품의하는 책임을 진다. 기부 수령 위원회는 최소한 매년 이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이 정책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면 품의서를 작성하여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사무총장은 이 정책이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동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 또는 기타 주법과 연방정부법과 불일치할 때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정책을 개정할 권한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기부 수령 위원회에 이 정책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또한 관리위원회의 다음 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품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X. 정책 발효 일자

기부 수령 정책은 2005년 4월 27일 채택되었으며, 동 일자로 발효하였다. 2006년 12월 20일, 최신 은행정보와 미미한 수정이 이루어져 승인과 함께 채택되었다. 모든 기부 합의는 당초 기부가 수령되는 시점에서 유효한 기부 수령 정책에 의하여 관리된다.